

구미도시공사 정관 인가 보고



구 미 시

구미도시공사 정관 인가 보고

의 안	
변 호	

제출연월일 : 202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보고이유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구미시설공단에서 구미도시공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구미도시공사 정관안」을 인가하였기에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설립 기본 사항 (제2조~제4조)

나. 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제10조)

다.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제11조~제25조)

라. 이사회에 관한 사항(제26조~제34조)

마.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제35조~제45조)

바. 사채등 발행에 관한 사항(제46조~제48조)

사. 정관의 변경, 보고, 업무상황 등에 관한 사항(제49조~제54조)

아. 임직원의 고용승계 및 공단 재산·권리·의무 포괄승계(부칙 제3조~제4조)

3. 정관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정관)

나. 기 타 : 구미시장 인가(2023. 9. 22.)

구미도시공사 정관

[2023. 9. 26. 제정, 정관 제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구미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 개발과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사의 명칭은 구미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Gumi Urban Corporation(약호 GMUC)라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시에서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사가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제6조(규정의 제·개정) ①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제·개정 운영한다. 다만, 자체내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사 업

제7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8.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탁하여 운영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2.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3.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4. 도서관 관리·운영
5. 추모공원 관리·운영
6. 탄소제로교육관 관리·운영
7. 휴양림, 캠핑장 관리·운영
8. 신라불교초전지 관리·운영
9. 하수·폐수·가축분뇨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관리·운영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11.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법 제65조의3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사업의 집행)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분양가격 등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1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 감사,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사장과 이사 1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 미래도시기획실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한다.

④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시 회계과장으로 한다.

⑤ 공사는 임원의 채용 및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면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 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의 팀장이 된다.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를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5조(조직 및 정원) 공사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수행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공사 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파산 선고로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무원 및 정부, 지방투자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9.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제18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9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0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 비상임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 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2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3조(대리인의 임명)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공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4조(고문) ① 사장은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공사는 고문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신분보장) 공사의 임·직원은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 당연 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한 의안
7.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8.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9.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10. 자금의 장·단기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11.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2.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13.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
14. 기타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한 사항

제28조(의결권의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29조(의장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 할 수 있다.

제30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 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서면의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2조(재심요청)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4조(운영규정 등) 상기이외의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35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6조(예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는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사의 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성립 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7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와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39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및 사업준비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40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제41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국가나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국가나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기금)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3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경우에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사채 등 발행

제46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 목적
2. 사채의 발행 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모집 및 인수방법

③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발행연월일
4.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제47조(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48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9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보고) 사장은 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공사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52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제53조(경영평가) 공사의 경영평가는 법 제78조 및 영 제68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사장의 임면과 공사의 업무개선, 기관 평가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4조(준용) 이 정관에 정한 사항 이외는 법, 영,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구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공단의 직원은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공사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5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공단에서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사업으로 본다.

관계법령

□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관의 제·개정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 관 부 서		예산재정과
입 안 자	과 장	정 윤 호
	팀 장	정 순 영
	담 당 자	남 혜 란 (480-2557)